

- **(질의 1)** 전공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부득이한 경우 30일 이상의 수련 공백이 발생 시 추가 수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. 이때의 30일은 평일을 의미 하는 것인지
 - 평일, 휴일 구분 없이 행정적으로 수련기관에서 행정적으로 처리된 일수를 기준으로 계상합니다.

- **(질의 2)** 수련 공백이라는 것이 포상휴가/육아휴직/예비군 훈련과 같은 「근로기준법」 하의 사안과 의무장교의 훈련소 입소 등의 특수한 사안에도 적용 되는 것인지
 - 포상휴가, 육아휴직, 예비군 훈련 등은 수련규칙 표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가 및 휴직에 해당되어 수련공백에 해당합니다.
 - 다만, 군의관 조기입소에 따른 미 수련은 휴가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추가 수련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.
 - 참고로 「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」 제5조에서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출산휴가, 군복무 후 수련자, 수련병원 이동 등의 사유는 수련기간 조정 건이므로 수련공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
- **(질의 3)** 휴가를 ‘반차’ 개념으로 사용하게 되면 0.5일로 계수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
 - 반차는 0.5일로 계상됩니다.

- **(질의 4)** 만약 추가 수련이 발생하게 되었다면, 어떤 방식으로 수행하게 되는지
 - 추가 수련은 그 기간만큼 해당 수련병원(기관)내에서 통상적인 수련을 합니다.

- 예를 들어 10일의 추가수련이 발생하였다면, 10일간 추가 수련을 하여야 하며 공휴일 등의 휴일은 10일안에 포함되지만 휴가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.

□ (질의 5) 추가수련을 받게 되었을 때 전문의 시험은 언제 치르게 되는지

- 「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」 제10조에 따라 수련 종료연도 5월31일까지 추가수련이 완료 예정인 자는 해당 연도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, 그렇지 않으면 차기년도에 응시하여야 합니다.

□ (질의 6) 학회 및 전문의 시험 당일 역시 수련일에 포함되지 않고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지

- 전문의 자격시험일은 수련일에 포함되며,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에 따른 필수 학회 참석은 수련일로 인정되나, 그 이외의 학회 참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